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경인여대)] 결정(변경)안

2014. 3

인 천 광 역 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경인여대)] 결정(변경)안

의안 번호	1099
----------	------

제출년월일 : 2014. 3. .

제출자 : 인천광역시

1. 제안이유(경인여대)

- 경인여자대학교 교지 확장을 통한 중장기 학교발전구상 토대 마련 및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 교지 확보율 : 26.3%(기준 미달), 교사 확보율 : 84.3%(기준 미달)
- 확장 부지내 軍시설(계양 예비군 훈련장) 연계 이전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정주여건 개선

2. 주요내용

-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548-4번지 일원
- 규 모 : 90,841.3㎡ (확장후 면적)
- 사업기간
 - 계획단계 : 2013년 ~ 2017년, 시공단계 : 2017년 ~ 2021년
- 사업비 : 1,417억원
 - 학교부지 확장사업 : 약 1,160억원, 軍시설 이전사업 : 약 257억원
- 시의회 의견청취 내용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 31,440.3㎡ → 90,841.3㎡(증 59,401㎡)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 363,258.8㎡ → 351,321.8㎡(감 11,937㎡)

3. 입안내용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0,841.3	-	90,841.3	100.0	
주거 지역	소계	31,440.3	-	31,440.3	34.6	
	제1종일반주거지역	31,440.3	-	31,440.3	34.6	
녹지 지역	소계	59,401.0	-	59,401.0	65.4	
	자연녹지지역	47,464.0	-	47,464.0	52.2	확장
	보전녹지지역	11,937.0	-	11,937.0	13.1	확장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 적 (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자연경관지구	77,454.0	-	77,454.0	-	
최고고도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13,394.6	-	13,394.6	-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경인여자 대학교	대학	계양구 계산동 548-4번지 일원	31,440.3	증) 59,401	90,841.3	인고 제91-41호 (91.3.20)	

○ 학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경인여자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90,841.3m² (증) 59,401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한 계양예비군 훈련장을 교지로 추가 확보하여 교사의 유기적운용과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학교명	위치	구분	토지이용계획(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경인 여자 대학	계양구 계산동 548-4 일원	계	31,440.30	증) 59,401.00	90,841.30	100.0	
			건축부지	7,166.04	증) 9,480.64	16,646.68	18.3	
			녹지부지	12,844.44	증) 25,713.15	38,557.59	42.5	
			도로부지	5,946.12	증) 9,332.76	15,278.88	16.8	
			주차장부지	633.00	-	633.00	0.7	
			광장부지	2,504.20	증) 3,964.70	6,468.90	7.1	
			운동장부지	2,346.50	증) 4,676.15	7,022.65	7.7	
			부대시설부지	-	증) 6,233.60	6,233.60	6.9	

- 건축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25%이하	25%이하	100%이하	100%이하	6층이하	6층이하	
자연녹지지역	-	20%이하	-	80%이하	-	4층이하	
보전녹지지역	-	20%이하	-	50%이하	-	3층이하	

- 전체 건축물 결정(변경) 조서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지상층연면적(m ²)		층수 (지상/지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7,166.04	16,646.68 (증9,480.64)	50,368.28	84,302.16 (증33,933.88)	29,875.05	55,538.47 (증25,663.42)		
기정	본관	2,183.90	2,183.90	12,965.70	12,965.70	10,711.90	10,711.90	5층/1층	5층/1층
기정	스포츠피어 국제교육원	1,125.03	1,125.03	7,190.27	7,190.27	2,761.32	2,761.32	3층/3층	3층/3층
기정	학생생활관 도서관	1,380.49	1,380.49	6,095.39	6,095.39	4,059.77	4,059.77	5층/2층	5층/2층
기정	미래관	829.92	829.92	4,896.93	4,896.93	4,106.36	4,106.36	5층/1층	5층/1층
기정	20주년 기념관	1,646.70	1,646.70	16,612.82	16,612.82	8,175.70	8,175.70	6층/2층	6층/2층
기정	주차장	-	-	2,578.42	9,226.09 (증6,647.67)	-	-	-	-
기정	창고	-	-	28.75	28.75	-	-	-	-
증축	호텔실습관	-	2,088.01	-	6,681.63	-	6,264.03	-	3층/1층
증축	기숙사	-	2,200.05	-	7,040.16	-	6,600.15	-	3층/3층
증축	간호대학	-	2,030.68	-	8,122.72	-	8,026.80	-	4층/1층
증축	노인복지관	-	1,610.54	-	3,376.86	-	3,221.08	-	2층/1층
증축	유아교육관	-	855.80	-	1,369.28	-	855.80	-	1층/1층
증축	강당	-	695.56	-	695.56	-	695.56	-	1층

2)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계양 공원	근린 공원	계양구 계산동 산52-1번지 일원	363,258.8	감) 11,937	351,321.8	인고 제2013-98호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계양공원	• 면적 감소 - 11,937.0m ²	• 경인여자대학교 교지 추가확보로 인한 공원면적 감소

4. 입안사유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한 기준 및 입지기준을 충족하며 확장 부지내 계양 예비군훈련장 이전을 전제로 경인여대 측에서 입안제안한 사항으로 주변 지역 주거환경 및 경인여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바람직)함.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종합한 결과 부동의 의견이 없으며 보병 제17사단에서도 계양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전제조건으로 조건부 동의한 사항으로 입안 반영 추진함

5. 추진경위

- 1991. 3. 14 : 인천여자전문대학으로 학교 신설 결정(인고 제91-41호)
- 1996. 11. 15 : 인천여자전문대학→경인여자전문대학 명칭 변경(인고 제209호)
- 2011. 4. 11 :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구역계 결정(변경) 31,440.3m²,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 2013. 4. 30 : 군사시설 이전 협의(市 → 국방부 시설기획환경과)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차 추진 예정 (市)
- 경인여대가 공익사업 시행자 자격을 갖추어 요청시 협의 가능(국방부)
- 2013. 7. 23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서 제출(경인여대 → 市)
- 2013. 7. 24 : 관계기관 협의(市 → 17사단, 계양구청 등)
- 2013. 10. 3 : 17사단 군보심의 결과 회신(조건부 동의)
- 향토 안보지킴이 예비군훈련장 / 시설, 부대 / 작전시설 선 이전 후 사업 시행
- 2013. 10. 8 : 입안반영 결정 통보(市 → 경인여대)

- 2013. 10. 22 : 조건부 이행각서 제출(市 → 17사단)
- 2013. 11. 25 :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제출(경인여대→市)
- 2013. 12. 3 : 도시관리계획 입안서 제출(경인여대→市)
- 2013. 12. 3 : 관계 행정기관 협의(市 →17사단 등)
- 2013. 12. 23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과 보고
- 2013. 12. 24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14. 1. 24 : 관계 행정기관 협의결과 통보(市 →경인여대)
- 2014. 1. 28 : 도시관리계획 입안서 보완 제출(경인여대→市)
- 2014. 1. 29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경인여대→市)
- 2014. 2. 3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협의(市→한강유역환경청 등)
- 2014. 2. 6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완료
- 2014. 2. 1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 2014. 2. 20 : 조건부 이행각서 제출(경인여대 → 市)
- 2014. 2. 23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완료

6. 각종 영향분석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 및 협의 진행중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예정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별표1>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완료
 - 실시계획 인가 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개발사업) 작성할 계획임
- 교통성 검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6-2-2>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이동성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대책을 수립
- 경관성 검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6-2-1>

- 개발계획의 의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경관계획(축방향, 스카이라인, 가로경관, 색채 등)과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계획(입면, 높이, 색채 등)을 수립
- 토지적성평가 <국토계획법 제27조 3항>
 - 도시관리계획 입안하는 단계에서 개별 토지별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하여 개발계획 수립

7.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 청취기간 : 2014. 2. 10 ~ 2014. 2. 23
- 청취방법 : 시보 및 지방 일간신문 (2개소)
- 청취결과 : “별첨 1”
- 관계 행정기관(부서) 협의내용 : “별첨 2”

8. 상위계획 및 관련법 검토

가. 상위계획 검토

-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2012. 11. 12) 기 반영
 -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적 문화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교류 확대

나. 관련법 검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3호 라목, 바목)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 공원, 학교 중 대학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국토계획법 제29조 제1항)
 - 인천광역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계획법 제30조 제3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대상(규칙 제2조 제2항)
 - 학교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세부 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

9. 주변여건 검토내용

구분	현황 및 문제점	잠재력 및 계획방향 설정
입지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일원에 위치 ○ 인천시청 북동측 10km 지점, 계양구청 북서측 1.5km 지점 ○ 남측으로 계양산로(15m)와 접함 ○ 동측으로 외곽순환도로 계양 IC 입지 ○ 동남측으로 1km내에 인천지하철 1호선 계산역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한 광역 교통 체계와 접근성 용이 ○ 지하철 접근이 가능하여 대중 교통수단 양호
자연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고는 60m~100m 범위로 비교적 높음 ○ 경사도는 15도 이하의 완만한 경사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가 심한 일부구간의 지형 고려가 필요
인문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학교 부지를 제외하면 임야로 구성됨 ○ 계양 예비군 훈련장이 입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양 예비군 훈련장의 연계 이전이 필요
도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에 해당함 ○ 대상지의 일부 근린공원으로 지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에 북측 근린공원의 일부 편입이 불가피함

10. 기타 (재원조달계획)

가. 사업비 산정

단위 : 억원

구분	1단계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사업시행자지정)	2단계 (국방부 토지매입)	3단계 (실시계획 인가)	4단계				
				4-1단계 (간호대학)	4-2단계 (호텔· 실습동)	4-3단계 (기숙사)	4-4단계 (유아 교육관)	4-5단계 (노인 복지관)
토지 매입비	-	240	-	-	-	-	-	-
인허가 및 설계비	8	12	5	-	-	-	-	-
건축비	-	-	-	280	308	346.5	67	150.5
단계별 금액	8	252	5	280	308	346.5	67	150.5
총액	1,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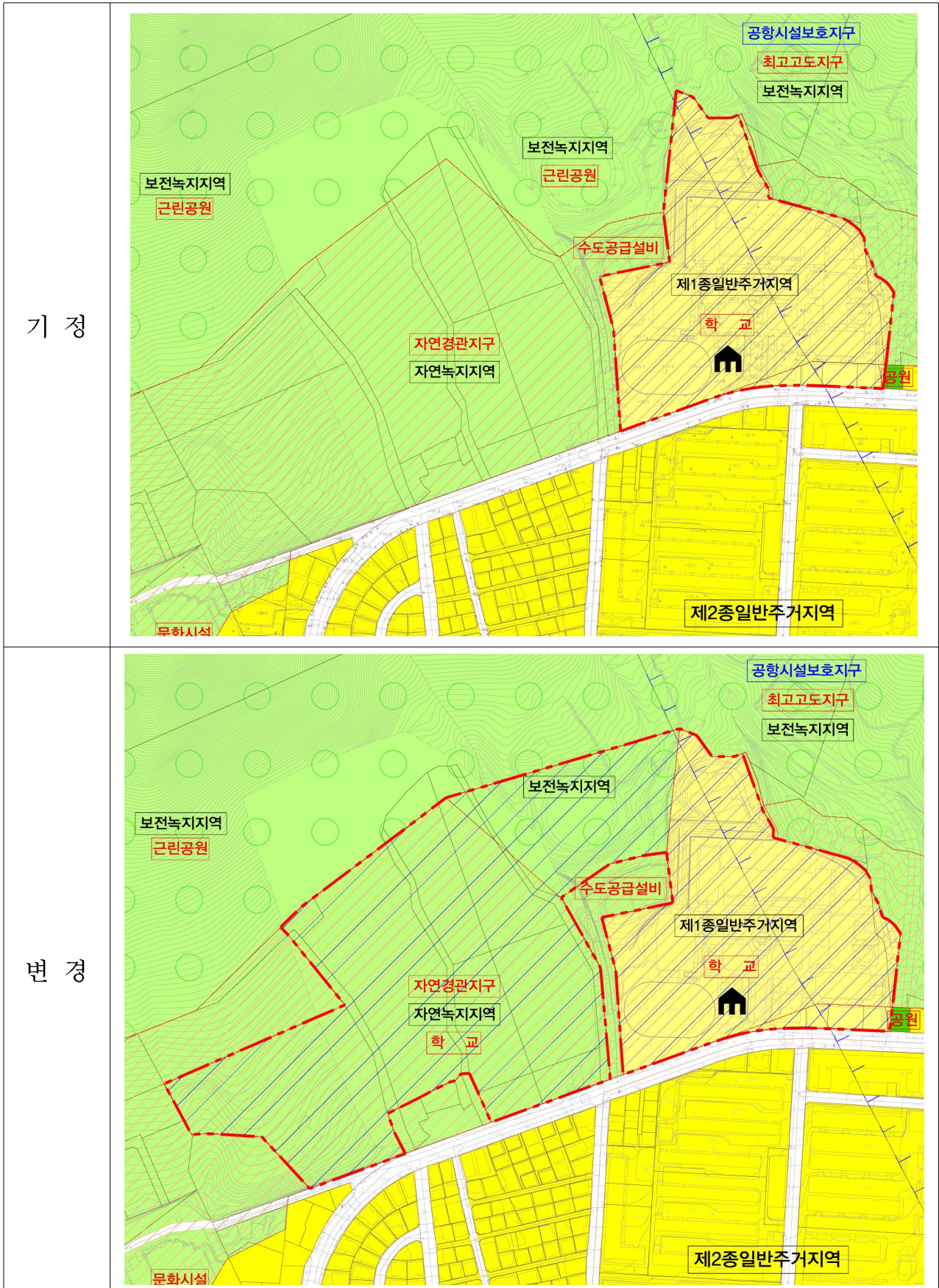
나. 토지매입계획

구분	토지매입(점용)계획		
	소유자	필지수(면적)	매입 및 점용
1단계	-	-	-
2단계	국방부	10필지 (44,690.0㎡)	매입
3단계	국토교통부	3필지 (3,059.0㎡)	구거점용
	인천광역시	1필지 (11,652.0㎡)	매입

※ 위치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도



<별첨 1> 주민 열람(공람)공고 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성명	주소	제출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	-	의견	없음	-

<별첨 2> 관계 행정기관(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 인천시 관계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계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市 도 시 디자인 추진단	○ 경관성검토서 상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여주시고, 향후 기본설계 완료 전 또는 실시계획 완료전 주변자연환경 및 역사자원을 고려한 구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우리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 실시계획인가 전에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 야간 경관계획, 색채계획 등 구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디자인 추진단과 별도 협의 추진하겠음	반영
	【건축물 형태 및 외관계획】 산지에 입지하는 특성상 ‘조명시설 설치를 통한 야경연출로 지붕 구조물에 대한 특화 및 상징성 부여’ 방안은 재검토 바람	○ 실시계획인가 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협의를 이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색채계획】 주변에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경관유형별 색채가이드라인 중 ‘자연경관’에 해당되는 색채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주시기 바람(면셀색표계로 작성요망,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기본계획 p.174 참고)	○ 색채계획은 기본계획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재수립하였음	반영
【기타】 기타 각종 시설물 설계 시 상세기준은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 2010」,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기본계획 2010」을 참고 (자료출처 : www. webhard.co.kr //ID flyic PW 1234)	○ 실시계획인가시 상세기준을 참고하여 수립하고 별도협의를 이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관계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市 문화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각 사업의 실시 계획 작성 완료 전까지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 지표조사를 이행하여야 함.(기 조사결과는 문화재청의 의견에 따라야 함) ○ 인천광역시 시 기념물 제10호 ‘계양산성’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신청 여부에 따라 관할 구청의 검토를 받을 것. ○ 사업착공후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계획인가 전에 관련규정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이행 및 관할 구청의 검토를 받도록 하겠음 ○ 또한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에 신고하도록 하겠음 	반영
市 환경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규정에 따른 생태보전 협력금 부과대상임을 회신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겠음 	반영
市 공원 녹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지확장을 위한 공원부지 일부 편입구간은 사유지로서, 당초 입안 제안시 ‘힐링의 숲’으로 제시된 구간(현 계양산 진입로, 등산로 활용 구간)에 교지확장으로 인한 기존 공원부지 감소면적(11,937㎡) 만큼의 대체부지 확보 및 공원 조성하여 기부채납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부지 편입에 따른 대체부지 면적 확보를 위해 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市 교통 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여부, 제출시기, 심의요청시기 등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계획인가 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반영

관계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市 하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계획단계에서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한 해당 구역 주변의 빗물, 오수처리계획을 관련 도면 및 수리검토서를 첨부하여 별도 협의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계획인가 전에 관련도면 및 검토서를 첨부하여 별도 협의를 이행하겠음 	반영
市 상수도 사업본부 (수도시설 관리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계산² 배수지에 변동이 없으므로 의견없음 ○ 사업시행 및 완료후 배수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 및 완료후 배수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반영
市 녹색 에너지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사업주관자)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함)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 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협의)하여야 함. <p><도시개발사업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 60만㎡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계획인가 시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겠음 	반영

관계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市 녹색 에너지 정책과	<p><건축물 또는 공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사업주관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연간 2천5백toe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이용 하는 시설 ②연간 1천만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 민간사업주관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연간 5천toe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이용하는 시설 ②연간 2천만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p>○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의2 규정에 의거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총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고 신·재생 에너지 건축물로 인증을 받고 자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함.</p> <p>○ 사업구역일원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등에서 일반 및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인천광역시 친환경 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표준공사비의 1% 이상 투자 권고 - 공공건축물(330㎡~1,000㎡)을 건설할 경우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에 표준공사비의 5% 이상 의무투자(공동주택의 경우는 1% 이상) <p>○ 계양구지역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인천도시가스(주)와 사전협의 추진 	<p>○ 실시계획인가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겠음</p>	반영

□ 계양구 관계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

관계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계양구	도시 정비과	○ 의견없음	-	-
	공원 녹지과	○ 검토 의견 - 공원부지 편입에 관한 사항 (의견없음) - 사업시행 전 ‘산지관리법’에 따른 협의 진행. - 산림욕장 등산로(콘크리트 포장)와 힐링숲 연계 등산로를 조성하여 일반인이 이용 가능 하도록 조치방안을 검토할 것.	○ 실시계획인가시 산지관리 법에 따른 협의를 이행하 겠음 ○ 대상지내 힐링의 숲 및 등산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힐링의 숲 북측에 보행동선을 확보하였음	반영
		○ 기타 사항 - 기타 타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할 것. - 현황 등산로 및 시설물에 대해 서는 향후 협의(허가)시 별도 조건이 부여될 수 있음. 예시) 등산로 및 시설물은 인천시 또는 계양구에서 공 익상 필요한 경우 학교측과 협의 후 변경·보수·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적극 협조하여야 함. 끝.	○ 실시계획인가전 귀 부서와 협의를 이행하고 타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음	반영

관계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계 양 구 건설과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는 국유 재산(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18조의 관련 규정에 의거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국유재산에 건물·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음 ○ 편입토지조서 <table border="1" data-bbox="354 1245 916 1570"> <thead> <tr> <th>소재지</th> <th>지번</th> <th>지목</th> <th>지적 면적 (㎡)</th> <th>편입 면적 (㎡)</th> <th>소유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계산동</td> <td>산62</td> <td>구거</td> <td>863</td> <td>733</td> <td>국 (건설부)</td> <td></td> </tr> <tr> <td>계산동</td> <td>산63</td> <td>구거</td> <td>1,375</td> <td>1,278</td> <td>국 (건설부)</td> <td></td> </tr> </tbody> </table>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계산동	산62	구거	863	733	국 (건설부)		계산동	산63	구거	1,375	1,278	국 (건설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국유재산(행정재산) 토지 이더라도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되면 사용허가를 득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학교 확장) 이후 실시 계획인가 시점에서 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사용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음 ○ 또한 구역에 포함되는 산 63-2구거는 현재 관리청이 국방부이지만 금번 추진하는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인하여 훈련장이 다른 위치로 이전될 예정으로 관리청 또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된 모든 필지는 실시계획인가 시점에서 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사용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음 	반영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계산동	산62	구거	863	733	국 (건설부)																			
계산동	산63	구거	1,375	1,278	국 (건설부)																			

관계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계양구 건설과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의거 개발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 행위허가를 받은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시 무상귀속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람 ○ 계산동 산62-2번지 토지는 소유자(재산관리청)가 국(국방부)임에 따라 관리청인 국방부와 별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 편입 토지조서 <table border="1" data-bbox="352 1429 999 1944"> <thead> <tr> <th>구분</th> <th>소재지</th> <th>지번</th> <th>지목</th> <th>지적면적 (m²)</th> <th>편입면적 (m²)</th> <th>소유자 (재산관리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경인여자대학교 교지확장</td> <td>계산동</td> <td>산62</td> <td>구거</td> <td>863</td> <td>733</td> <td>국 (국토교통부)</td> <td></td> </tr> <tr> <td>입안제인 및 입안서</td> <td>계산동</td> <td>산63</td> <td>구거</td> <td>1,375</td> <td>1,278</td> <td>국 (국토교통부)</td> <td></td> </tr> <tr> <td></td> <td>계산동</td> <td>산62-2</td> <td>구거</td> <td>1,383</td> <td>1,048</td> <td>국 (국방부)</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재산관리관)	비고	경인여자대학교 교지확장	계산동	산62	구거	863	733	국 (국토교통부)		입안제인 및 입안서	계산동	산63	구거	1,375	1,278	국 (국토교통부)			계산동	산62-2	구거	1,383	1,048	국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와 별도협의를 이행하였으며, 실시계획인가시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반영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재산관리관)	비고																												
경인여자대학교 교지확장	계산동	산62	구거	863	733	국 (국토교통부)																													
입안제인 및 입안서	계산동	산63	구거	1,375	1,278	국 (국토교통부)																													
	계산동	산62-2	구거	1,383	1,048	국 (국방부)																													

□ 제17보병사단 의견 및 조치계획

관계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제17보병 사단	<p>기 협의된 조건부내용('13-27차, '13.10.03) 이행 및 환경관련 사항 추가</p> <p>○ 신청지역은 인천시 향토방위 및 수호를 위한 안보지킴이 예비군훈련장 및 병영 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대급 이상 지휘·통제·통신시설 및 지휘소가 운용되는 지역임. 도시개발시 전·평시 민·관·군·경 통합방호태세 유지 및 작전수행, 지휘·통제·통신 등의 제한사항 발생이 예상되나 인천 지역개발 및 발전, 국가안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건부 동의함.</p> <p>1. 향토 안보지킴이 예비군훈련장/시설, 부대 / 작전시설 선 이전 후 사업시행</p> <p>- 예비군훈련장 / 시설(교육관, 사격장, 방송/통신 등), 부대/작전시설(병영생활관, 지휘소, 경계초소, 복지시설 등) 설치</p> <p>※장소 선정은 인천시(경인여대)에서 계양구 일대지역 민원을 고려하여 3개 지역선정(통보), 군이 현장확인 후 최종결정</p> <p>※ 세부사항은 군 요구안 수용 및 별도 협의</p>	<p>○조건부 동의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여 이행각서를 제출하였음</p>	반영

관계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제17보병 사단	2. 도시관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 재협의 3. 사업추진에 관한 모든 행정문서 보안유지(언론공개 금지) 및 일체의 이의제기 금지 ※ 생태계 조사결과에 대해 기 체결된 협약서('14.01.13) 준수 철저 4. 상기 조건내용 수용 시 이행각서 제출 후 사업시행 ※ 사업지구 내 포함된 국방부 토지 (계산동 722-97번지 등 11필지)는 국방부경기남부시설단(재산관리 1과)으로 별도 협의	○조건부 동의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여 이행각서를 제출하였음	반영